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의 '노동' 개념 이해가 농민의 정치적 주체화에 끼친 영향

곽한나*

1920년대 초 노농운동 조직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개념사적 시각에서 1920년대 초 '노동' 개념이 농민을 '노동하는 자'로서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는 담론적 기반을 형성했음을 주장한다. 1900년대 유길준의 '노동' 개념은 신성한 것이지만 동시에 교육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담론은 1910년대 『학지광』에서도 지속되며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라는 문제의식이 공유된다. 1920년대에는 조선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수하다는 인식은 조선에서는 아직 공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진단으로 이어진다. 또한 '농민'은 지주와는 수직적인 착취 구조 하에서, 공장 노동자와는 수평적인 비교 속에서 조선에서 가장 불행한 '노동하는 자'로 이증으로 정체화되었다. 1920년대 초 '노동'과 '농민'이 결합되며 시작된 노농운동에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단결'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단결'의 성질은 농민과 노동자를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까지도 그 범위를 계속 확장시켰다. 본 연구는 1920년대 초의 '노동' 결합을 '미성숙'이나 '오류'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 개념의 확장 속에서 농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부상하게 된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주제어 '노동', '단결', 농민, 노농운동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 '노동' 개념이 농민에게 투영됨에 따라, 소작문제와 노동문제가 결합하고, 또 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는 것이다. 당대 지식인에게 소작문제는 조선이 당면한 과업으로서 노동문제와 함께 해결할 것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민이 '노동자'로 호명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현실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1924년에 여러 노동단체와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고, 각 지역의 농민회에서도 소작문제와 노동문제를 함께 결의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1920년대 초 강력한 '노동' 개념의 자장은 농민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본고는 1920년대 초 당시 '조선 인구의 7할을 차지하는 농민'이 어떻게 인식되고, 호명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¹ 식민지 조선에서 농민이 어떻게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상상되고, 의미 있는 범주로 호명되었는지를 살핀 것은 클라크 소렌슨(Clack Sorensen)의 연구가 있다.² 그에 따르면 식민지로 주권을 잃은 상황에서 오직 농촌 지역이 한국인의 종족적인 공간이 되었다. 소렌슨의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이 상상되는 범주가 '농민'이었고, 농민은 한국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는 사회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농민이 민족의 담지자인 것을 넘어, 당대 담론장에서 '노동'하는 자로 호명되었다고 보며 20세기 초 농민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더하고자 한다.

1920년대 중반부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문제의식이 공유되며 '노동'이 민족운동의 새로운 흐름에 자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배경으로, 맑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론이나 노동동맹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³ 양자의 결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노동계급과 농민 사이의 연대성을 강조하

1 농촌 문제를 다룰 때 '농민은 조선 인구의 7-8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문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관용구로 자리 잡을 만큼 당대에 보편적으로 쓰였다.

2 클라크 소렌슨(2006), 「10장 식민지 한국의 '농민' 범주 형성과 민족 정체성」,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신기욱·마이클 로빈슨 편저, 도면회 역), 삼인.

3 김경일(1992),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pp. 167-175.

며 노농동맹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한 시각이 있다.⁴ 하지만 이러한 관점조차 1920년대의 노농동맹은 미숙하였고, 확고히 실현되지 못했으며 그 실현을 준비하는 단계에 그쳤다는 것을 전제한다. 양자의 결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지식인들이 노동자와 농민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피착취 대중이라는 일반적 개념하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성을 해소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비판하였다.⁵ 즉, 1920년대 초 노농운동에 대한 시각은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발전론적 시각하에서 완전하지 못한 '미성숙'이자 '오류'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는가? 이는 양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일하는 자'라는 인식이, 이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일한 운동의 주체로 묶어냈기 때문이다. 김명식의 '정치와 법률과 상업과 공업과 농업이 노동이 됨은 물론이라. 어찌 사회 만반이 노동이 아님이 있으리오'라는 말은,⁶ 당시 담론장에서 '노동' 개념이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이 시기 강력했던 '노동'이라는 틀에서 농민운동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노동' 개념의 사상적 위치를 밝힌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 '노동' 개념의 세계사적 맥락과 한국에서의 수용과 변화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김경일의 연구는 한국 근대 '노동' 개념에 내재한 이상주의와 인격주의를

4 김경일 편(1989), 『북한 학계의 1920·30년대 노농운동 연구』, 창작과 비평사(리종현(1962), 「1920년대 전반기 농민들의 처지와 농민운동의 장성」, 『력사과학』 6]; 淺田喬二(1973),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未來社;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1980), 『조선전사』 15권, p. 238.

5 김인걸(1964), 『1920년대 맑스 레닌주의의 보급과 노동운동의 발전』, 조선로동당출판사(일송정 역사신서3, 1989, p. 32.)

6 김명식, 「勞動問題는 社會의 根本問題이라」, 『공제』 1, 1920. 9.

짚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⁷ 또한 ‘노동’을 다른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한 연구는 ‘생(生)’과 ‘문화’와 연결한 김명재,⁸ ‘소유’와 함께 고찰한 황병주의 것이 있다.⁹ 위의 연구들이 ‘노동’ 개념의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어떠한 이들이 ‘노동자’로 상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김현주의 것이 가장 참고가 된다. 근대계몽기부터 1920년대 초까지 ‘노동’ 개념을 분석한 김현주는 ‘노동자계급’이란 사회적, 문화적 구성체이기도 하고, 담론적 형성 역시 그 구성 과정의 중요한 일부라고 보았다.¹⁰ 김현주의 연구는 당대 ‘노동(자)’ 담론이 노동자계급의 형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추진해간 중요한 사회적 동인이었음을 전제한다.

본고는 1920년대 초 ‘농민’이 어떻게 ‘노동자’로 상상되어가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00년대부터의 ‘노동’ 개념이 어떻게 ‘농업’·‘농민’과 연결되었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00년대는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을, 1910년대는 『학지광』을 통해 1920년대의 전사(前史)로서 ‘노동’ 개념의 지형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된 1920년부터, 조선노동연맹회가 1924년에 경남도노동운동자간친회, 전라도노동연맹, 남선노동동맹을 개최하고, 전조선노동총동맹 역시 1924년 4월에 발기회가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여,¹¹ 1924년 초까지의 기간을 주로 분석할 것이다. 1920년대 ‘농민’의 노동자성을 본격적으로 살피는 데에는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인 『공제』와 식민지기 대표적인 잡지인 『개벽』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자료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자료까지 함께 시야에 넣어 담론 구

7 김경일(2014), 『노동』, 소화.

8 김명재(2021),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식민지 조선의 노동문제 인식 변화와 ‘계급투쟁론’의 형성과정: ‘生(life)’·‘文化(culture)’개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50.

9 황병주(2021), 「1920년대 초반 소유 개념과 사유재산 담론」 『개념과 소통』 27.

10 김현주(2008),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1890년대에서 1920년대 초까지」 『상허학보』 22.

11 김창순·김준엽 공저(1986),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2』, 청계연구소.

조를 살필 것이다.

2. 1910년대 '노동' 개념과 '농업'·'농민'의 지형

1920년대의 '노동'과 농민의 관계를 살피기 전, 이전의 담론 지형은 어떠한지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1908년 간행된 교과서 『노동야학독본』을 주목하고자 한다. 『노동야학독본』은 유길준의 '노동' 개념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지금까지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¹²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규명한 것은 『노동야학독본』이 근대 노동관(신성화된 노동)을 담고 있고,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대 출판된 일본의 노동자 교육교재나 잡지 『교육월보』와 비교할 때 다소 어려운 윤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은 유길준의 '노동'의 범위에 '농사'가 '공장' 노동과 병렬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¹⁴ 제16과 「힘 역사(力役)」에서는 힘을 들여 수고하는 일을 '노동'으로 보고 있는데, 박힌 일의 예로서 '농사의 노동, 공장의 노동, 부상의 노동, 각종 노동 중에 특별한 지각과 한정이 있는 일'을 들고 있다. 바로 다음인 제17과 「노동의 정업」에서는 '농사의 노동'을 더욱 상세히 분류하여 밭 가는 일, 누에 치는 일, 짐승 기르는 일, 나무 심는 일, 물고기 기르는 일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규명한 대로 유길준은 '노동'이 거룩함을 강조한

12 조윤정(2013),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계몽의 정치성: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고찰」, 『인문논총』 69; 황호덕(2014), 「자본과 언어,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의 노동 개념과 문체의 테크놀로지: 통치, 계몽, 지휘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4; 조윤정(2018),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과 『노동야학』 비교 고찰」, 『구보학보』 19.

13 김윤희(2015), 「근대 노동 개념의 위계성: 『서유견문』에서 『노동야학독본』까지」, 『사림』 52.

14 유길준(1908), 『勞働夜學讀本』, 경성일보사.

다.¹⁵ 22과의 「노동의 거룩(巨祿)한 일」에서는 “거룩하도다 노동이여. 국가의 근본이 이에 있으며 사회의 근본이 이에 있으니 부강하고자 하는가. 노동을 잘 해야 되고 문명하려 해도 노동을 잘 하여야 한다”는 구절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은 ‘교육’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¹⁶ 28과의 「노동연설 5」에서 유길준은 “여러분 당신들이 어려서 배우지 못한 까닭으로 이 노동이지요. [...] 당신들 자제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몇 백 년 부끄러움을 씻어 봅시다”라는 말은, ‘노동’이 벗어나야만 하는 고통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정리하자면 유길준은 힘을 쓴다는 점에서 농사와 공장 노동을 같은 ‘노동’으로 상정했다. 이때 ‘노동’의 범위는 힘을 쓴다는 점에서 농촌 생활 전반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다. 또한 ‘노동’은 신성한 것임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학지광』의 유학생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을까? 1910년대 『학지광』의 글 중 ‘노동자’에 대한 가장 깊은 고민을 담은 글은 김철수의 「노동자에 관하여」이다.¹⁷ 김철수는 ‘노동’이라는 두 글자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가장 넓은 범위에서 정신적 노동과 신체적 노동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는 천하만인이 노동자이다. 둘째, 광의의 범위에서 신체적 노동으로서, 직접 신체를 움직여 역역(力役)을 파는 자를 노동자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범위로는 노동 중 공장 노동을 하는 자만 노동자라고 하였다. 김철수는 문명제국의 노동문제는 대체로 마지막 세 번째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문제를 노동문제라고 하

15 강재순(2004), 「한말 俞吉濬의 實業活動과 勞動觀」, 『역사와경계』 50; 성숙경(2008), 「대한제국기 ‘게으른 조선인’ 담론과 근대적 노동자 만들기」, 『한국사학보』 31.

16 조윤정(2013),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계몽의 정치성: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고찰」, 『인문논총』 69.

17 김철수, 「勞働者에 關하여」, 『학지광』 10, 1916. 9. 4.

지만, 조선에는 노동자의 자각은 고사하고 자본가도, 공장도 없어 문명제국의 노동문제로 해석하면 조선에는 노동문제가 아직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김철수는 노동에 대한 두 번째 정의, 즉 신체를 움직여 역역(力役)을 파는 자를 노동자로 보아, 조선에는 노동자가 아닌 자가 없으며 조선의 “노동 문제는 이미 존재하였으나 미각혼동(未覺混同)중에 있다”고 생각함을 밝혔다. 그리고 ‘사회의 진화’에 있어 ‘노동자’가 필수라고 보며 “우리의 불가피할 의식을 공급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김철수의 글에서 ‘농민’이 직접적으로 호명되지는 않으나, 신체를 움직이고, 의식을 공급하는 자를 ‘노동자’로 호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7년 전영택의 글에서도 “선철(先哲)이 말하기를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였다. 땀흘리며 땅파는 이를 보면 과연 허리를 굽혀 절하고 싶다”고 하며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일하는 자”라는 넓은 범위에서 이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또한 ‘노동’은 신성하다는 담론이 『학지광』에서도 나타난다. 송진우의 「사상개혁론」은 종래 조선의 공교(孔敎), 가족제, 강제연애, 허영교육 등을 버릴 것을 논하는 사설이다.¹⁹ 송진우는 허영 교육을 타파하고 실리 교육을 할 것을 주장하며 허영 교육은 ‘노동 학대’를 가져온다고 보며, ‘노동은 신성’이기에 타인의 피와 땀을 먹지 않고 스스로 권면하여 운명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천부의 능력이자 인생의 요무(要務)라고 보았다. ‘노동’은 민족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노동이 부족하다면 위대한 민족이 웅비(雄飛)하기 어렵다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

노익근 역시 조선의 재력을 감손치 않고 경제진흥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경제진흥에 대한 나의 의견」에서 노동의 신성에 관해 논한다.²⁰ 노익근은 외품 사용 방지, 혼상제의 절약, 고등유민의 구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익근은 하등 사회에서는 남녀가 모두 직

18 전영택 「全的生活論」, 『학지광』 12, 1917. 4. 19.

19 송진우, 「思想改革論」, 『학지광』 5, 1915. 5. 2.

20 노익근, 「經濟振興에 對한 余의 意見」, 『학지광』 6, 1915. 7. 23.

업이 있어 생활을 경영하지만 그 이상의 계급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월일을 한다고 비난한다. 특히 지주와 부인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여름(夏日)이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담배대나 가루 물고 낮잠이나 자고 겨울이면 따뜻한 방중(房中)에 앉아 소설이나 낭독하는 것이 일생의 업무”라는 점을 비판하며 이들에게 “상당한 직업”이 있으면 가산의 탕진도 없을 것이고, 전민족의 재력도 풍부해질 것이기에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이라는 사상을 무엇보다 먼저 수입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하지 않는 계급에 대한 비판이 공유되는 것도 『학지광』의 특징이다. 「양반의 쇠망과 박멸론」은 여러 이유로 양반을 비판하는 글이다.²¹ 그중, “저들은 놀고 먹는 것이 전래하는 상습이라. 아무것도 아니하고 놀고먹지 않으면, 혹 친척에게 기생충이 아니 되는가”라는 구절은 양반에게 가하는 비판의 근거가 ‘노동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의 신성에 대한 논의는 이후 1920년대에 ‘노동자’가 신성하다는 논의로 발전한다. 유진희는 『공제』에서 일신(一神)을 숭배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오늘날은 노동자를 숭배하는 시대라며 과거에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숭배하였으나 오늘은 생산자, 즉 노동자를 숭배하는 시대라고 하며 노동자를 숭배할 것을 주장한다.²² 유진희의 글에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범인(凡人)이다. 그러나 성자(聖者)이다. 제왕같은 허위의 사람이 아니되겠다는 범인이며 만인을 해방하고 만인에게 왕자의 권능을 주고 만인을 숭배하고 만인에게 사역하면서 자기만 신과 같이 침묵하는 지성자이다. 희생자인 그는 늘 사랑(愛)과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일한다. 그에게는 비판도 업고 낙망도 없이 온갖 것을 묵허한다. 이 범인의 천하는 여사한 평온이

21 추봉, 「兩班의 衰亡과 撲滅論」, 『학지광』 15, 1918. 3. 25.

22 무아생, 「勞働者の文明은如斯하다」, 『공제』 1, 1920. 9. 10.

지배하는 곳이다. 금은으로 부패하고 약탈로 부패하고 이자와 세금으로 부패한 왕과 귀족과 자본가를 숭배하지 말 것이다. 지금부터는 지성자인 노동자를 숭배하자.

'노동자'는 범인, 성자, 지성자, 희생자로 호명된다. 즉, 1910년대 『학지광』에서는 '노동'이 신성하다는 주장이 『공제』에서는 '노동자'가 신성한 자라는 것으로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지광』에서는 '농업'이 현재 조선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노익근은 금일 조선의 경제는 10분의 7, 8이 '농민경제'라고 하며, "농민의 휴척(休戚)은 일국의 휴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농민의 저축이 왕성하면 전국의 저축이 왕성"할 것이라 보았다.²³ 장덕수 역시 "조선사회의 경제는 농업이 유일산업"이라 보아 따라서 토지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²⁴ 『학지광』 필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후 1920년대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921년의 신동기는 "우리 조선에는 농업노동자가 7할 7푼의 다수"에 달하는 농업국이기에 농업노동문제에 대하여 공장노동문제와 별개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²⁵ 농업에 종사하는 이가 7~8할을 넘는다는 인식의 주체가 '농민'에서 '농업노동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920년대 이전, '노동'은 신체를 움직여 일하고, 그 노동력을 파는 광의의 의미에서 이해되었다. 아직 노동자의 자각, 자본가, 공장이 부족한 조선에서 노동문제를 논할 때 '농사'를 짓는 '농민'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의 범위 역시 광의로 상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노동'이 신성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확인된다. 이는 추후 1920년대 『공제』의 주요 논의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노동'에 관한 장기지속적인 담론

23 노익근, 「半島 今後の 金融과 生活改新의 急務」, 『학지광』 5, 1915. 5. 2.

24 장덕수, 「卒業生을 보내노라」, 『학지광』 6, 1915. 7. 23.

25 신동기, 「農民救濟策」, 『학지광』 22, 1921. 6. 21.

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지광』에서는 현재 조선에서 ‘농업’과 ‘농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더 나아가 1920년대 초에는 농민은 농업노동자로 그 호명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동’의 신성함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가 농민을 노동자로 상상하게 하였다. 농민의 노동자성은 1920년대 담론 지형에서 더욱 발전되어 전개된다.

3. 1920년대 초 농민과 ‘노동’ 개념의 담론장

1920년대 초 농민은 ‘노동’ 개념과 긴밀히 엮이며 ‘노동하는 자’로 호명된다. 이때의 농민에 대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계와 비교했을 때 조선은 특수하고, 농업 역시 다른 산업과 다르다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속에서 농민이 조선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둘째, 농민은 착취하는 지주에게 고통받고, 공장노동자에 비해 더욱 비참하다는 구도 하에서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위치지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3장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3.1. 조선과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의식

우선 첫째, 농민의 ‘노동’에 대한 전제의 핵심은 ‘특수성’이다. 이 특수성은 세계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수성과,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먼저 조선이 가진 특수성은, 조선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인식 하에서 나타났다. “구미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은 사회문제는 조선에서 아직 결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나경석의 논설은,²⁶ 사회문제에 있어 시간적으로 조선이 지체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신백우의 글 역시 “대저 노동이라하면 범위가 광범하여 노력(勞力)하는 자는 물론이요 노심(勞心)하는 정신노동자까지 산입하겠으나, 금일 태서(泰西)로부터 발발한 노동문제는 육체노동자이요, 육체노동자에도 공업노동자등 곧 임은노동자가 중추 지위에 있는 듯하도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장도 없고 따라서 임은노동자도 소수인 반면에 농업노동자가 최다수이요 농업노동자는 거진 소작인”이라고 하며 조선은 대규모 공장도 없고, 소작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하는 신백우의 글에 대해 서양의 노동운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자기 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민족 주체적으로 실사구시의 방법에 의거하여 조선의 노동운동을 전개한 획기적인 주장이었다고 평가한다.²⁷ 또한 김명재는 이러한 인식을 ‘시기상조론’으로 묶어, 서구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노동 문제 제기 자체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고 그 조건과 환경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견해로 정의했다.²⁸ 그러나 신백우의 글을 ‘민족 주체성’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보기보다는, 당시 세계적 차원의 일반적인 문제를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 국내 개혁을 도모하려는 인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²⁹ 또한 당대 지식인들이 ‘시기상조론’을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 궁극적으로 조선의 농업, 농민 문제의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는 주장과 연결되었다는 점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의 시간과 조선의 시간 사이에 놓인 불일치’에 대한 인식은,³⁰ 조선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특수성’ 논의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개벽』 2호

26 나경석, 「世界思潮와 朝鮮農村」, 『공제』 1, 1920, 9. 10.

27 신용하(1986),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의 창립과 노동 운동」, 『사회와 역사』 3, p. 165

28 김명재(2021), p. 118.

29 허수(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p. 48.

30 허수(2009), p. 46.

의 글은,³¹ 노동문제, 부인문제, 인종문제는 세계 3대 문제로 각각 그 역사, 계통, 활동이 있지만 조선 사람은 이 문제의 중심에 직접 접촉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고 방면이 다르다고 보았다. 위 세 가지 문제는 금일 세계적 보편 사조로 어느 국가, 민족을 물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소화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으로 [...] 소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현대 문명의 본산지 되는” 구미와 이용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노동문제를 진단할 때, 첫째, 조선에 순수문제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원인은 조선이 아직 유치한 농업국의 위치에 있어 공업국에 다다르지 못하였고, 둘째, 아직 농업 본국에 있어 다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업과 달라 비교적 경제상 계급 차이가 그닥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 보았다. 더하여 “조선인으로 조선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먼저 세계적 노동문제와 조선적 노동문제의 정도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920년, 조선은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조선이 유치하고 저열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농업이 특수하다는 인식과 연동되었다. 선우전은 “조선인의 직업의 8할 이상이 농업에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기술상으로 경험상로나 상공업에 대하여 아직 상당한 포부를 갖지 못한 다수 주민은 농업에 의치 아니하고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³² 덧붙여 “농업의 산업적 특질을 상공업 그것에 비하여 보면 농업 자체가 현대적 산업 가치를 자지(自持)치 못하였으므로 윤리적 관념보다도 경제적 관념 하에서 사리(私利)를 목적하는 사업경영자와 노동자가 원시적 성질을 가진 농업을 배(排)하고 근대적 성질을 가진 상업이나 공업 등 기업에 귀(歸)코저 하는 것은 시세에 반하여 생기는 필연의 일이다.”라고 보았다. 선우전에 따르면 대

31 「世界 三大 問題의 波及과 朝鮮人의 覺悟如何」, 『개벽』 2, 1920. 7. 25.

32 선우전, 「農民의 都市移轉과 農業勞働의 不利의 諸原因」, 『개벽』 26, 1922. 8. 1.

체로 농업은 첫째, 경영상으로 볼 때 윤리적 관념을 기초로 한 공리주의하에서 경영되기에 상공업과 같이 영리적 관념을 기초로 한 사리주의(私利主義)하에서 경영되기에 부적합한 관계 즉 기업화되기에 부적합한 성질을 가졌고, 둘째, 금일 자본주의와 기업주의를 주로 하여 조직된 온갖 경제 제도 조직은 상공업 경제 발전에 대하여는 다대한 편의를 주나 농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주지 못하고, 셋째, 농업은 자연법칙의 영향을 받는 점이 많아 상공업의 경우와 같이 과학적 지식과 인적 기능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덧붙여 농업의 자연성으로, 절기적 자연성, 장소적 자연성, 외침에 저항하기 어려운 자연성, 비보험적 자연성을 꼽으며 이로 인해 농업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우전이 농업이 가진 어려움을 강조한 것과 달리, 1923년 『개벽』의 「신조선의 운명과 농민의 지위」라는 글은 농업이 가진 특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³³ 이 글은 특히 농업을 조선의 민족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이 아직도 상공문명의 경애(境涯)에 도달하지 못하고 농업 본위의 역에 방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가 될까? 혹은 요행이 될까 하는 질의가 있다 하면 나는 이에 대하여 다만 현실적 고찰로써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특수 경우 우리의 현실 처지에 잇서는 시종여일(始終如一)히 농업적 애인을 버려서는 안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 민족이 만일 농업을 버리고 상공에 달아난다 하면 그는 현명순실한 본체를 버리고 유두분면(油頭粉面)의 애첩에 혹하여 전래의 가산을 파산하는 부량적 행위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여 나는 상공업을 절대 배척한다는 말은 아니라 다만 조선 사람의 현재 처지가 조선으로써 상공문명을 이르킬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말이며 설사 우리 조선이 하루 아침에 변하여 상공**

— www.kci.go.kr

33 「新朝鮮의 운명과 農民의 地位」, 『개벽』 41, 1923. 11. 1.

문명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그 문명은 필연적 세로 자본주의의 **외래의 세력**에 의하여 건설될 것임으로써 **그러한 문명은 필경-조선인의 문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선인으로 더욱 경제적 노예를 짓게하는 문명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겠다 함이라.** 그럼으로 조선인으로 금일 경제 전쟁에 취할 도는 소위 견벽불출의 전술 하에서 **굳건히 농업을 직히고 농업을 향상케 하고 농민을 계발케 하여** 인내와 노력으로써 우리의 특유적 농업문명을 이뤘농음에 있으며 나아가는 현대 문명의 개조로부터 새로히 건설될 신사회에 영합할만 한 이상적 농국(農國)을 준비함에 있다 하는 말이다. (강조는 인용자)

이 글에서 농업 본위의 조선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 민족이 농업을 버리고 상공업에 “달아나는 것”은 본처를 버리고 애첩에 혹하여 가산을 파산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 조선이 하루 아침에 변하여 상공문명을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명은 “자본주의의 외래의 세력”에 의해 건설된다는 점에서 “조선인의 문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선인을 더욱 경제적 노예로 만든다고 말한다. 즉, 조선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직 미발달의 상태라고 보는 다른 글과 달리 이글은 조선의 근본을 오히려 농업에 두며 민족성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합하자면, 1920년대 초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수한 곳으로, 대부분의 지식인은 조선이 ‘아직’ 미발달의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를 진단했다. 현재 조선에서 ‘농업’은 조선인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이었지만 농업 자체가 상공업과 달리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소작인은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농업의 특성은 농업이 조선 고유의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등, ‘조선’ 고유의 ‘농업’은 서로 강력히 연결되며 담론의 지형을 그렸다.

3.2. 지주·노동자와의 비교 속에서의 '농민'

다음으로, 농민은 다른 계급과의 비교 속에서 '노동' 개념과 연관되었다. 농민은 지주와는 수직적인 착취 구조 하에서, 공장 노동자와는 수평적인 무산 계급의 비교 속에서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먼저 박달성은 “우리 농민이야 말로 더운 땀을 혼자 흘립니다. 쉬지 아니하고 일합니다. (...) 눈코 뜰새없이 밤낮 뼈가 빠지도록 노력에 노력을 가하여도 생활난”에 빠진다고 하며, 그 이유는 “우유도식하는 공적놈들”임을 지적한다.³⁴ 즉 일하지 않는 ‘공적’과 노동함에도 가난한 농민의 구도를 그렸다. 이후 이 대립 구도는 지주-소작인의 관계로 더욱 구체화된다. 지주-소작인 구도에서 지주는 토지라는 자본의 소유자이다. 반면 소작인은 노력(勞力)의 제공자인 동시에 생산적 활동에서는 기업자의 지위를 겸유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소작인은 노동 보수 밖에 얻지 못하고 분배액의 ‘보장’을 갖지 못하여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 자본에 대한 이자일망정 일정한 분배액의 ‘보장’이 있는 지주는 비사히 유리한 지위를 얻는 것으로 이해되었다.³⁵ “조선에서 유산계급이라 하면 결코 타국과 같이 상공계급이 아니오 지주 계급이다. 따라서 조선서 무산 계급이라 하면 [...] 노동자가 아니오 소작인이다”라는 구절은 지주-소작인 관계가 유산-무산의 틀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⁶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의 자장하에서, ‘노동하지 않는’ 지주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조선의 지주는 실로 아모것도 아니하는 계급이다. 그들은 자기에 집을 지었다 헐었다 하고, 자기네의 자녀를 장가들이고 시집보내고 그러고 가만히

34 박달성, 「時急히 解決할 朝鮮의 二大問題」, 『개벽』 1, 1920. 6. 25.

35 일기자, 「農村과 勞動問題」, 『공제』 7, 1921. 4. 17.

36 박달성, 「地主는 엇지할고? 특히 副業共進會를 機會로 入京하는 이에게」, 『개벽』 40, 1923. 10. 1.

앉았거나 혹은 낮잠을 자고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마치 참외 익기를 기다리던 고슴도치 모양으로 호기당당(豪氣堂堂)하게 전야로 내려와 추수의 반분(半分)을 소작인에게 지우고 어서 빨리 하고 재촉하면서 청한(淸閑)한 산채(山寨)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들은 육체적 노역은 물론이어나와 정신적으로도 일분의 노역(勞役)도 아니하는 완전한 한민(閔民)이다. 석일의 전제군주도 그들처럼 완전하게 철저히 한민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사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아모 공헌이 없고 오직 소작인의 고혈만 빼는 기생충이다. (강조는 인용자)

노동하지 않는 지주는 사회에 대해 공헌이 없고, 소작인의 고혈을 빼는 기생충으로 상상된다. 이들은 소작인의 노역(勞役)의 결과를 까닭 없이 점유하며 소작인에게 보수를 줄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의 은인이오 부모보다도 더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은인”인 소작인을 깔시하기까지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다. 지주의 착취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작인은 “질박하고 순후한 풍기”를 가진 선한 존재로 묘사되고,³⁷ 지주들을 위해 혈제(血祭)에 바치는 “희생적 동물”의 운명으로 그려졌다.³⁸

이러한 인식은 조선 군중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한 조선총독부의 분석에도 나타난다. 조선총독부는 소작쟁의의 사상적 근거를 통찰하며, 소작인 계급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지주는 소작인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이 책의 저자 무라야마 지준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하며, 소작인을 착취당하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37 나경석, 「世界思潮와 朝鮮農村」, 『공제』 1, 1920. 9. 10.

38 「小作人問題에 對하여 (3)」, 『동아일보』 1922. 8. 2.

종래 지주는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상당의 향락으로 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소작인의 상황은 어떠한가? 향락은커녕 그 생활은 의복도 궁할 정도로 빈곤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활 향상 등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토지에 의해서 생활하는 지주와 소작인이, 하나는 일하지 않아도 부유한 생활에 편안히 있고, 다른 하나는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도 기아에 고통받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생산된 것의 분배가 양자의 사이에 공평히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의 부유는 소작인에게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착취한 결과 밖에는 없다.³⁹

한편으로, 소작인은 공장 노동자와 무산 계급이라는 틀 안에서 비교되며 그 특수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1920년대 초 노농동맹의 흐름 속 가장 대표적인 글로 회자되는 신백우의 「소작인조합론」은 특히 임은노동자와 소작인을 비교하며 소작인의 불우한 처지를 드러낸다.⁴⁰ 해당 사설에 따르면 조선은 임은노동자가 소수인 반면, 농업노동자가 최대수이고, 농업노동자의 최다수는 소작인이다. 그리고 조선의 임은노동도 구미와 비교하면 지극히 불평등하지만, 도리어 우리 '소작인노동자'에 대조하면 우월한 문명적 생활이고, 안락한 행복적 생활임을 말하고 있다. 임은노동자는 “백미반(白米飯)을 먹으며 노동복이라도 남루한 의복은 입지 않으며 야간에는 전등 아래에서 신소설 책자라도 볼 수 있고 질병이 있으면 의약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성근한 자는 다소간 저축도 할 수 있지만” 소작인은 “초근목피까지 먹으며 의복은 땀이 배고 때가 덕지덕지 묻은 남루한 것을 입었으며 야간에는 화호봉창(華戶蓬窓)에 금구(衾具)도 완전하지 못하게 거처”하여 임은노동자에 비해 소작인의 처지가 더욱 빈곤함을 드러냈다.

최중갑의 글은 임은노동자와 소작인의 비교를 더욱 날카롭게 전개한

39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1926), 『朝鮮의群衆』, p. 16.

40 신백우, 「小作人組合論」, 『공제』 2, 1920. 10. 10.

다.⁴¹ 임은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보수로 임을 받지만, 소작인은 자본에 대한 보수로 소작료를 지불한다. 전자는 자본주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후자는 노동자가 자본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 법칙으로 볼 때 이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은노동자는 변형적 소작인이요, 소작인은 변형적 임은노동자”로, 노동운동 중 소작인 문제는 당연히 포함된다. 최중갑의 글에서 조선의 농촌은 “세계 유일의 지옥”으로 묘사되며 “사람을 저주하려거든 조선 농촌의 소작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며 조선의 농촌이 지옥보다도 더 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최중갑은 지주의 계약해제의 자유를 소작인 고통의 원인으로 들며 “도회의 임은노동자는 노력(勞力)의 수급관계가 과도의 노력(勞力) 잉여 상태에 함(陷)치 아니하면 그리 노동의 부자유(不自由)가 격심하지는 아니하지마는 농촌의 소작인이야 한번(一度) 소작권이 피탈되는 때는 다시 농업을 회복할 희망이 없어 아사할 외에 타도가 없는지라. 이 점에 이르러서는 그 불행함이 임은노동자의 그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농민이 소작권 때문에 오히려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된다는 관점은 1923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선우전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작인과 상공업 노동자 지위와 경우 여하(1)~(5)」에도 잘 드러나있다. 선우전은 소작인에게 노동 보장이라는 것은 노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보장이 되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 관찰하면 노동의 속박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지에 대한 소작권의 획득이 노동의 보장인지, 속박인지는 소작인의 노동상태와 심리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소작인이 유리한 상태에서 소작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노동의 보장이 되어 소작인의 행복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 조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소작권을 소유하였다면 이는 토지에 속박된 부자유의 노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작인이 자기의 ‘소작노

41 최중갑, 「今日 朝鮮의 勞資關係, 地主와 小作人 附 小作人 萬吉의 生活」, 『개벽』 15, 1921. 9. 1.

동'을 과하게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의 자유를 일층 속박하고, 소작권 획득 경쟁에 들어가 서로 다투기 때문에 결국 지주의 권위만 증장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⁴²

즉, 1920년대 초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농민은 노동함에도 가난하고 유의유식하지만 자본을 가졌기에 생활을 '보장' 받는 지주와 비교되며 불우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노동'한다는 점은 같지만 임은노동자보다도 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다른 계급과의 비교 속에서, '농민'은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담론 틀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3.3. 문제 해결의 주체

비참한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주체가 언급되었다. 우선 농민이 스스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담론이 우세했다. 신백우는 소작인을 호명하며 “때가 왔도다. 쫓겨하여라.”라고 하며 소작인 조합을 발기하고 조직할 것을 촉구했다.⁴³ 문제의 해결로 소작인의 각성과 단결을 꼽는 것은 『개벽』에서도 나타났다. 박달성은 자본가부터 각성하여 농촌개발과 빈민구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농민 또한 자각하여 농회를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⁴⁴ 1924년의 O민의 「사상의 귀추와 운동의 방향」에서 역시, “만국 노동자는 단결하라”는 것보다는, 먼저 「조선 농민은 각성하여 단결하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⁴⁵

그리고 지주는 문제의 원인이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었다. 나경석이 조선의 특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42 선우전, 「小作人과商工業勞働者地位와境遇如何(5)」, 『동아일보』, 1923. 9. 26.

43 신백우, 「小作人組合論」, 『공제』 2, 1920. 10. 10.

44 박달성, 「時急히 解決할 朝鮮의 二大問題」, 『개벽』 1, 1920. 6. 25.

45 O민, 「思想의 歸趨와 運動의 方向」, 『개벽』 45, 1924. 3. 1.

법으로 지주의 자각과 양보에 의해 호의로 해결할지, 또는 소작인의 자발적 행동에 의해 강구할 것인지 그 복선이 농촌에 있다고 전망한 것에서 나아가,⁴⁶ 1923년의 글은 더 구체적으로 지주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⁴⁷ 지주는 악독하게 농민을 착취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농민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그 방법으로 소작료의 저감, 소작권의 이동을 삼갈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 담론 속에서 지주 중심의 ‘자유 계약’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공제』의 필자는 자본가와 임노동자의 관계는 자유계약이라는 미명하의 강제계약이라 하지만 지주와 소작인의 계약 관계는 한층 더 가혹하다고 보았다.⁴⁸ 최종갑 역시 조선의 관례는 지주에게 소작권 여탈의 자유가 있다고 하며 지주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소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제로 보았다.⁴⁹

마지막으로 ‘당국자’ 역시 문제 해결의 주체로 호명되고,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 촉구된다. 최종갑은 지주와 소작인을 강자와 약자로 설정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국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문한다.⁵⁰ 이에 대해 국가가 강자와 약자, 둘의 공통한 국가라 하면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 국가 존재의 본의라고 보았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소작인에게 생명이 되는 소작권의 보장을 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작인의 정당한 요구를 용인하여 소작인의 생활을 보장할만한 소작료를 정할 것이 필요하다고하며, 이 글에서 해결의 주체로 ‘국가’가 지목된다. 선우전 또한 법과 당국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선우전은 금일의 농업은 소작 농업이 중심이 됨에도 소작제

46 나경석, 「世界思潮와 朝鮮農村」, 『공제』 1, 1920. 9. 10.

47 박달성, 「地主는 엇지랄고? 특히 副業共進會를 機會로 入京하는 이에게」, 『개벽』 40, 1923. 10. 1.

48 일기자, 「農村과 勞動問題」, 『공제』 7, 1921. 4. 17.

49 최종갑, 「今日 朝鮮의 勞資關係, 地主와 小作人」, 『개벽』 15, 1921. 9. 1.

50 최종갑, 「今日 朝鮮의 勞資關係, 地主와 小作人」, 『개벽』 15, 1921. 9. 1.

도, 소작계약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아직 미비하다고 보며, 여러 소작에 관한 일반 중요 사항에 대해 이를 명확히 하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⁵¹ 농민 문제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이성환 역시 '정치당국'을 해결의 주체로 상정한다.⁵² 조선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당국자'가 현재의 농촌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영구성을 가진 소작권을 제정하고, 소작료도 법률로써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소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국자의 법률 제정이 지목되었다.

정리하자면 '노동'의 문제의식하에서 제기된 소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는 농민 자신, 지주, 당국자 이렇게 세 집단이 소환되었다. 이때 농민은 운동의 주체로서 호명되어 추후 1920년대 노농운동에서 '단결'할 것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지주를 제지할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흐름은 1930년대 소작법 입법 움직임으로 나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 1920년대 노농운동과 해결책으로서의 '단결'

주지하듯 1920년대 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단체가 창립되었다. 1922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 제3회 정기대회에서 소작인조합의 결성 결의부터, 1924년 '노농'의 기치 하에 많은 단체가 우후죽순 창립되었던 시기까지 2년 동안 실제 운동에서 '노동'과 '농민'의 담론적 결합이 있었는지를 보다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단체의 결의문과 강령을 분석함으로써 '소작문제'는 어떻게 '노동문제'와 같이 논의되었는지 그 논리 구조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 노농운동의 흐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20년 4월

51 선우전, 「農民의 都市移轉과 農業勞働의 不利의 諸原因」, 『개벽』 26, 1922. 8. 1.

52 이성환, 「朝鮮의 農政問題 農村의 衰頹를 恬然視하는 當局, 小作法制定이 目下の 急務」, 『개벽』 29, 1922. 11. 1.

11일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1921년 4월 제2회 정기총회를 경과하기까지는 분열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제2회 정기총회 개최 후 조선노동공제회 지도부는 인텔리파와 비인텔리파로 나뉘었으나 장덕수(서울청년회), 차금봉(노동자), 윤덕병(북성회)의 세력 중 압도적인 세력이 없이 비등한 상황이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제3회 정기대회에서 소작인 조합 결성을 결의하고 폐회하였다. 이후 1922년 7월 유명한 「소작인은 단결하라」가 발표되었고, 같은 해 10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조선노동공제회는 해체된다. 다음날인 1922년 10월 16일, 윤덕병은 조선노동연맹회를 발기한다. 1923년 4월에 열린 조선노동연맹회 제2회 정기총회에 풍기소작조합이 가입된 사실은 노농단체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선행연구는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청년회계는 1923년 9월 16일 윤덕병의 조선노동연맹회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노농대회를 준비한다. 두 단체는 서로를 견제하며 조선노동연맹회는 1924년 경남도노농운동자간친회, 전라도노농연맹, 남선노농동맹을 개최하였다. 서울청년회의 조선노농대회 준비위는 1924년 2월 초, 조선노농대회추진단체총회에서 토의할 노농대회소집방법 및 의제를 발표하였다. 1924년 4월 15일 전조선노농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남선노농동맹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속출하자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남선노농동맹의 김종범은 노농대회준비위에 전국적인 노농총동맹이 실현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합동에 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4월 16일 조선노농대회, 조선노동연맹회, 남선노농동맹 3단체가 모여 토의를 하고, 총동맹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음날인 17일 전조선노농총동맹이 열렸다.⁵³ 간단히 정리하자면 1922년까지는 단체명에 '노동'이, 1924년에는 모두 '노농'이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에서 단체의 기치와 '농민'의 노동자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동아일보』에 실린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 「소작인은 단결하라」

— www.kci.go.kr

부터 살펴보자. 선행연구는 이 선언이 한국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⁵⁴ 또한 식민지 운명을 벗어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 선언의 요령을 더 심오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았다.⁵⁵ 그러나 선언이 당대 '노동' 담론과 어떠한 점을 공유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선언은 『동아일보』에 1922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보도되었는데, 자본주의와 지주를 원인으로 상정한다. 우선 8월 1일의 (2)에서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구주에서는 공업발달로 인해 그 흡혈구를 공장노동자에 주입하였지만 대서양을 건너서 동방 각국을 침입할 때에는 '공장노동자가 적으니 농촌소작인'을 착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에 자본주의의 유입을 기점으로 '과거'는 긍정적인 것으로, 현재는 '비참'한 것으로 인식된다. 십수년 전까지는 자선적 관례가 있었고, 비록 구실이라도 소위 윤리와 도덕, 빈민을 구제하던 기현상, 청빈을 자랑하는 풍속으로 '돈'에 대하여는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하였다.⁵⁶ 하지만 자본주의가 조선에 침입되자마자 일반 경제 생활 상태는 돌변하여 소작인은 혈제에 바치는 '희생적 동물'이 되었다.⁵⁷

참고로 소작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조선의 소작 관습이 달라졌다는 인식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된다.⁵⁸ 이훈구 역시 "석일의 봉건주의적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지주와 소작인 간에 온정주의가 실행되어서 단순한 경제 관계보다도 지주는 차라리 소작인의 사회적 보호자로 필요하고 또 소작인에게 무형의 은택을 미치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54 신용하(1986), p. 167.

55 김장순·김준엽 공저(1986), p. 69.

56 「小作人問題에 對하여 (2)」, 『동아일보』 1922. 8. 1.

57 「小作人問題에 對하여 (3)」, 『동아일보』 1922. 8. 2.

58 곽한나(2025), 「20세기 초 소작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4-55.

이다. 그러나 세변속이(世變俗移)하여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균
립하게 됨을 따라서** 전일의 온정 관계는 자연 없어지게 되고 지주대 소작인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투상에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각축하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강조: 인용자)”라고 하며 역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현재의 불평등
의 원인으로 지목했다.⁵⁹

그리고 8월 2일의 (3)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처우를 비교한다. 글에
따르면 지주는 특권만 있고 소작인은 의무만 있어서 지주는 자본가인데 소
작인은 무산자이며 지주는 ‘신사’인데 소작인은 ‘노동자’이며 지주는 상전
인데 소작인은 노예이며 지주는 모든 권위자인 동시에 소작인은 온갖 피압
박자이다. 즉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에서 ‘신사’인 지주가 소작인을 착취하
는 수직적 구도 하에서 소작인은 비참한 ‘노동자’로 그려진다. 소작인은 과
도한 노동으로 생활의 모든 것이 불비하다. 그리고 ‘노동의 전가치를 약탈
하는 피등 지주배’는 ‘순소비자’로, 진일토록 노작(勞作)하는 소작인을 매도
한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써 소작인이 일일을 노동하면 노동한
그대로, 일년을 노동하면 노동한 그대로 착취할 뿐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
까지 모욕하기에 급급”한 지주에 대해 누구나 전율하고 공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정을 고조하며 글을 마친다. 착취하는 지주와 불쌍한 소
작인의 대비 구도가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선언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지주가 진일토록 ‘노동’하는 소작인을 착취
하는 구도가 더욱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8월 3일의 (4)는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앞서 해결 방법 중 하나였던 ‘법률’
이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에서는 원인이 된다.

현대 정치는 전연히 자본주의상에 수립된 것임으로 따라서 현행의 법률

은 소작인을 제외하고 소작인을 착취하는 상부 계급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대정치와 **법률**은 도리어 그것을 인정하며 조장하는 것만 보아도 그 외의 소작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는 조그마한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요컨대 그것은 특권계급이 자기자신에게 편리하도록 제정한 것이니까** 소작인에게는 유해무익한 것이 필경 당연한 귀취일 것이다.⁶⁰ (강조: 인용자)

앞서 선우전과 이성환이 '법'을 통해 소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과 다르게, 노동공제회에서는 법 자체가 특권 계급의 것이므로 소작인에게 유해무익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1930년대 소작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조선농지령>이 결국 지주 측의 요구를 중심으로 반영했기에 소작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에서 핵심을 짚는 진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⁶¹

또한 (4)에서는 본회가 왜 하필 소작인 문제에 대해 고뇌하느냐에 대해, 잡지의 사실과 같은 논리로 조선에서 공장노동자는 근근이 5~6만에 불과하고 소작인은 1,200~1,300만의 다수일 뿐 아니라 형식상으로 '근육 노동'이 동일하지만 생활의 협위를 받는 것은 도시공장노동자보다 농촌소작 문제가 더 절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노동'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소작인은 같으나 조선에서 소작인이 더욱 다수라는 점에서 소작인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더불어 소작문제의 해결로 지주의 반○(반성으로 보임)을 요구하자는 것은 이리로 하여금 양을 간수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소작문제의 해결은 소작인의 자각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하며 반드시 소작인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을 굳세게 믿고 "조선의 소작인이여

60 「小作人問題에 對하여 (3)」, 『동아일보』 1922. 8. 3.

61 최은진(2023), 『중속과 차별』, 역사비평사.

단결하라. 조선의 소작인이여 단결하라. 단결하여야 생(生)할 것이다”라며 ‘단결’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은, 조선에서는 현재 농촌 문제가 도시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또한 지주가 소작인을 ‘노동’의 관점에서 착취한다는 점은 다른 사설과 같으나, 문제의 원인을 ‘법’으로 지목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를 ‘소작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노동공제회 해체 다음날인 1922년 10월 16일 발기된 조선노동연맹회의 강령과 선언을 분석해보자.⁶² 강령은 세 가지로, ① 신사회의 건설 ② 생활을 개조하기 위한 지식의 계발과 기술의 진보 ③ 일치단결을 꼽았다. 그리고 선언에서 ‘오인은 결코 기계가 아니라 인격자’이고, ‘노동은 상품으로 매매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의 완전을 성립하려는 인간성의 정당한 발작’으로 ‘신노동문화’의 건설에 분투하고자 함을 밝혔다. 또한 ‘우리 조선’의 현상은 공장에서 임은노예는 가련한 여공, 유약한 유년공까지 창백한 안색으로 죽음의 길을 걷고, 농촌에서 소작농노, 시노(柴奴)들은 생활불안으로 유리개걸이 빈빈하다고 하며 임은노동자와 소작농노의 위치를 대비시키고 있다. 또한 조선노동연맹회의 선언 역시 ‘조선의 노동자도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위하여 만국의 노동자와 단결하여 분투’할 것으로 글을 마친다. 역시 ‘단결’이 추후의 행동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선언에서 농민의 ‘노동’은 크게 강조되지 않은채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연맹회에 참여한 단체가 인쇄직공친목회, 전차종업원조합, 양복직공조합, 이발조합, 공우협회, 진주노동공제회, 감포노동공제회로, 도시 위주의 상업 노동 단체의 수가 더 많았기에 지식인이 주도한 ‘노동’과 ‘농민’의 결합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⁶³

62 「勞働聯盟綱領」, 『동아일보』, 1922. 10. 21

63 「勞働團體의聯盟」, 『동아일보』, 1922. 10. 18.

한편 노농운동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코민테른과의 관계이다. 국제공산당 제4차 대회 조선문제위원회가 채택하고 1922년 12월 30일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상임간부회가 승인한 조선문제결정서에는, 현재 조선에서 공장프롤레타리아가 5만 명 정도로 공산당의 기초가 협소하지만 조선 남부 지방 일고(日雇)노동자, 소작농 운동과 서부지방의 도시노동연맹 조직에서 조선의 혁명적 에너지의 징후가 증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도시 프롤레타리아대중과 전국 일고 노동자, 반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공산당 조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⁶⁴ 또한 1923년 2월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 전반을 관장하고 국내외 공산주의 그룹을 통합해 새로운 공산당 결성을 담당할 조직으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건설된 고려총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총국은 1923년 3월 식민지 조선 내부의 사회주의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고려총국 내지부를 설립했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조직화가 전개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조직화 대상이 각 지역의 노농단체였다는 점이다. 1923년 6월 단계에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단체는 대부분 노동자, 또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였다. 내지부의 일원이었던 정재달이 코민테른에 발송한 보고서에도 농민운동과 노동자운동에 관해 매우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선 논설의 필자 신백우가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⁶⁵ 즉, 1923년부터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형 하에서 농민과 노동자 운동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노동연맹회가 1월과 3월에 개최한 지역 단위에서의 선언문은 어떠할까? 우선 1924년 1월 12일에 진주에서 열린 남선노농운동자간

64 조철행(2008),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p. 310.

65 최보민(2024),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와 노농운동」, 『동국사학』 80.

친회에서는 노동문제를 먼저 결의하고 소작문제를 결의했다.⁶⁶ 노동문제는 각 지방 노동자 상황 조사의 건, 노동단체조직의 건, 이류노동단체에 대한 건, 노동자 교양의 건 등 총 4건이 논의되고, 소작문제는 각지 소작 상황 조사의 건, 소작단체조직의 건, 이류소작단체에 대한 건 등 총 12건의 결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결의 중 유의할 것은 ‘11. 노농민의 호상관계에 관한 건’으로, 노동자와 소작인은 호상제휴하여 자기계급의 해방운동에 보조를 일치하게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이 결의에서는 청년문제와 여성문제, 특수문제까지 모두 다루어졌다. 즉, 노동자와 소작인 문제 뿐 아니라 모든 조선 사회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는 운동에서 해결 방법으로 ‘단결’이 주창된 것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4년 많은 노동단체와 농민단체가 모여 노농단체를 협력적으로 조직했다. 동시에 노농단체로의 전환을 하지 않고 노동단체, 농민단체로서만 남는 단체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많은 단체에서 노동문제를 소작문제를 함께 다루며 결의를 했다. 최근 조선의 “소작인운동, 노농연맹, 청년총동맹운동 같은 것”을 “단결 운동”이라고 평한 논설은 ‘약자의 무기’는 수(數)와 단결이라고 하며 이 무기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에 성공한 약자는 능히 자기를 해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러 동맹, 연맹을 조직하기보다는 통일적·중앙집권적으로 할 것을 강조한다.⁶⁷ 즉, 모든 사회 문제를 ‘단결’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농민단체, 노동단체, 노농단체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담론에서의 ‘노동’과 운동에서의 ‘단결’ 개념의 결실인 조선노농총동맹이 조직된다는 소식에 언론은 이를 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무산대중의 권력은 무엇으로 조성될 것인가. 다만 일치단결이 있을 뿐이다. 안으로 신념 밖으로 단결이 공고하여지는 때에 대중의 위대한 권위는

66 「懇親會의範圍擴大」, 『조선일보』, 1924. 1. 20.

67 「團結과中央集權」, 『동아일보』, 1924. 3. 26.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금일까지 우리에게 잘 실현되지 못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기는 돌아왔다. **반도의 무산대중은 이제 단결의 필요를 느꼈으며 단결의 방법을 알게되었다.**"(강조: 인용자)⁶⁸라고 하며, '단결'의 중요성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에도 마찬가지로 조선노동총동맹의 최고 의의를 '단결'로 평가한 「조선노동총동맹의 성립을 聞하고」가 있다.⁶⁹ 이 사실에서는 조선노동총동맹이 성립된 날을 조선노동운동의 영원히 기억할 날이라고 하며 '조선의 무산대중이 단결한 날'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조선의 민중은 모두 무산대중으로 상상된다. "우리는 다같이 속박을 받으며 착취를 당한다"고 하며 "무산대중의 전체가 이 단결의 신조를 봉신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조선노동총동맹 역시 '단결'을 목적으로 삼았다. 1924년 9월, 농촌의 상황이 심각하자 조선노동총동맹은 이에 대해 대책을 연구하던 중 우선 각 지역 가입단체에 통첩을 보냈다.⁷⁰ 그 내용은 "우리는 더욱 조직이 건실하고 질서가 정연하며 계획이 주밀하여야 능히 사멸의 선"을 넘을 것이니 '단결'의 의의와 그 '권위'가 이에 있다고 보며 피해조사 방식, 소작료, 수확 이전 매매 방지, 지주의 곡물 전대 등 네 가지 방안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1925년 3월부터 중앙집행위원회 제4회 간담회의 성격 문제를 두고 서울청년회계와 북풍회, 화요계의 대립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부터 농민단체와 노동단체를 분리하여 조직할 것이 논의되었다. 조선노동총동맹에서는 제8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26년 조선노동운동에 대한 새 정책을 성명했는데, 이때 노동자와 농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68 「勞農總同盟의 組織」, 『동아일보』, 1924. 4. 18.

69 「朝鮮勞農總同盟의 成立을 聞하고」, 『조선일보』, 1924. 4. 21.

70 「小作料는 三割以內로 標準하라」, 『조선일보』, 1924. 9. 4.

노동자와 농민은 원래 사회적 계급의 종류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해가 상반하는 점이 많다. 이 양자를 한 조합에 혼합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유치함을 표시할 뿐이다. 그러므로 我等은 본 총동맹의 세포단체를 노동, 농민 두 조합으로 구분 정리함과 동시에 총동맹도 또한 노동, 농민총동맹으로 분맹(分盟)하려 한다. **그런데 이 양자의 계급적 성질은 여하히 다르더라도** 그 정책적 지위, 생활상의 비애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한결음 더 나가서 그 중국의 목표는 전혀 같지 아니할 수 없으며, 양자가 서로 긴밀한 약속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총동맹의 협의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방에서도 또한 노동협의기관의 발달을 기할 것이다(강조: 인용자).⁷¹

19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선과 농업의 특수성 하에서 노동자와 같은 위치와 처지라고 이해되던 농민과 노동자는 사회적 계급의 종류가 다르고 이해가 상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 조합에 혼합하는 것이 ‘유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노동’ 개념하에서 동등하게 인식된 농민과 노동자가, 이후 ‘단결’이라는 실질에서의 운동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단결’할 대상이 무한히 확장되어 모든 대중으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운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해체되는 과정을 그동안 연구들이 운동의 ‘발전’이라 해석했던 것 역시, 서구의 발전 틀에 맞추어야 한다는 발전론적 강박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결합한 1920년대 초 노동과 농민의 단결이 ‘미성숙’한 것으로 치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1 농림신문사편(1949), 『農業經濟年報』, 농림신문사, pp. 337-339.

5. 맺음말

1920년대는 '노동' 개념의 자장 아래에서 농민은 '노동'하는 자로, 소작 문제는 '노동문제'로 인식되었다. 1900년대 유길준에게 몸을 움직여 노동력을 판다는 광의의 의미에서 '노동'에는 '농업'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10년대 『학지광』의 필자들 역시 '노동'은 신성하다는 담론을 전개함과 동시에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즉 '노동'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현재 조선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농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1910년대에 공유되었다. 1920년대에는 현재 조선이 구미와 달리 '아직' 공장 노동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농업이 가장 주된 산업이라는 인식하에서 노동문제 보다 소작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농민은 지주와는 착취적인 수직 구조에서, 임은노동자와는 동등한 수평 구조에서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지주는 노동하지 않는 자이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임은노동자는 노동한다는 점에서 소작인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형편이라는 담론 속에서 소작인은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상상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농민, 지주, 당국자가 상정되었다.

한편 실질적인 사회 운동에서도 농민은 '노동'과 연결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 역시 자본주의의 침입으로 지주는 '신사'로 소작인은 '노동자'로서 온갖 피압박자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유의할 점은 운동에서 '단결'이 핵심적인 해결 방법으로 주창된다는 점이다. 조선노동공제회 해체 다음날 발기된 조선노동연맹회 역시 '단결'을 주창하며 이제 농민과 노동자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아동의 문제까지 단결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1920년대 초 담론에서의 '노동'과 운동에서의 '단결'의 결실인 조선노동총동맹 역시 '단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하지만 '단결'의 부상은 계급적으로 운동의 주체와 범위를 희석시켰다. '노동'을 매개로 가능했던 소작 문제와 노동문제의 결합 역시 1926년의 분립 선언 이후 균열되었고, 결국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로 이어졌다.

본고는 1920년대 초의 ‘노동’의 결합을 단순히 ‘미성숙’이나 ‘오류’가 아닌, ‘노동’ 개념의 자장 속에서 바라보며 농민이 ‘노동하는 자’로서 호명되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개념사적 접근을 통해 농민을 ‘노동’ 개념의 틀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담론과 운동의 상호작용을 함께 시야에 넣고자 했다. 앞으로 소작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소유’와 ‘자유’ 역시 시야에 넣으며 1920~30년대 농업, 소작 담론의 여러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개벽』

『공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학지광』

유길준(1908), 『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

이훈구(1935), 『朝鮮農業論』, 한성도서.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1926), 『朝鮮の群衆』.

논저

강재순(2004), 「한말 俞吉濬의 實業活動과 勞動觀」, 『역사와경계』 50.

곽한나(2025), 「20세기 초 소작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일 편(1989), 『북한 학계의 1920·30년대 노동운동 연구』, 창작과비평사.

김경일(1992),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김경일(2014), 『노동』, 소화.

김명재(2021),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식민지 조선의 노동문제 인식 변화와 ‘계급투쟁론’의 형성과정: ‘生(life)’·‘文化(culture)’개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50.

김윤희(2015), 「근대 노동 개념의 위계성: 『서유견문』에서 『노동야학독본』까지」, 『사람』 52.

김인걸(1964), 『1920년대 맑스 레닌주의의 보급과 노동운동의 발전』,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창순·김준엽 공저(1986),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2』, 청계연구소.
- 김현주(2008),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1890년대에서 1920년대 초까지」, 『상허학보』 22.
- 농림신문사편(1949), 『農業經濟年報』, 농림신문사.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1980), 『조선전사』 15권.
- 성숙경(2008), 「대한제국기 '게으른 조선인' 담론과 근대적 노동자 만들기」, 『한국사학보』 3.
-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편저, 도면희 역(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 신용하(1986),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의 창립과 노동 운동」, 『사회와 역사』 3.
- 조윤정(2013),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계몽의 정치성: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고찰」, 『인문논총』 69.
- 조윤정(2018),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과 『노동야학』 비교 고찰」, 『구보학보』 19.
- 조철행(2008),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 淺田喬二(1973),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未來社.
- 최보민(2024),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와 노동운동」, 『동국사학』 80.
- 최은진(2023), 『중속과 차별』, 역사비평사.
- 허수(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 황병주(2021), 「1920년대 초반 소유 개념과 사유재산 담론」 『개념과 소통』 27.
- 황호덕(2014), 「자본과 언어,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의 노동 개념과 문체의 테크놀로지: 통치, 계몽, 지휘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4.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1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ABSTRACT

Categorization of
'*Nongmin*' (農民) within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Nodong*' (勞動) in the Early 1920s

Kwag, Hannah*

This paper argues that in the early 1920s, the concept of '*Nodong*' formed a discursive foundation that hailed peasants as political subjects of labor. Yu Gil-jun's concept of '*Nodong*' in the 1900s contained a contradiction; while labor was seen as sacred, it was also something one could escape through education. The discourse on the sanctity of '*Nodong*' persisted in the 1910s journal *Hakjigwang*, alongside a growing awareness that agriculture was the most vital industry in Joseon. In the 1920s, the perception of Joseon's uniqueness aligned with the diagnosis of the country as an agrarian nation, where industrial issues were not yet severe and agriculture remained paramount. Furthermore, peasant were doubly identified as 'those who labor': first within a vertical structure of exploitation by landlords, and second through a horizontal comparison with wage laborers. The concept of '*Dangyeol*' (團結) which emerged from the central concern of '*Nodong*,' posited peasants as subjects of unity and attempted to bridge the gap between peasants and laborers. However,

www.kci.go.k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concept of '*Dangyeol*' expanded to include women and youth, class clarity became diluted, leading to a differentiation in 1926 with the declaration.

Keywords *Nodong*, *Dangyeol*, Peasant, Peasant Movement

